

○○○중 이전 토지 수용재결취소등 청구 소송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2021두○○○○○ [3심]	사건유형	토지수용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1명
판결선고일	[3심] 2022. 2. 17. 상고이유서부 제출기각	비고	[1심] 2021. 1. 14. 각하판결(교육감 승) [2심] 2021.10.29. 원고패(교육감 승) [3심] 2022. 2.17.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교육감 승)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이전 재배치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55-1 일원)에 대하여 교육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4.12.30.자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처분을 받아 2016.7.19.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6.8.4.에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재결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었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수용재결처분의 위법함을 다투고,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고자 소를 제기함.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심 판결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피고는 원고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이를 확인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 이 사건의 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에 의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6. 7. 28.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2018. 6. 1.에야 제기되었는데, 위와 같이 공시송달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